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140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제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안 제6조)

-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안 제10조~제22조)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원칙, 운영, 기능, 위원장 등
의 직무, 회의, 위원 해촉 등, 분과위원회등, 회의록 공개의 원칙, 교
육 홍보 및 주민 참여,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재정 및 실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입법예고 사본 1부.

2.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1부.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5057, 2006.08.2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중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제10조(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 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 원칙)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지방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시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 및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2조(운영) ① 시민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 ② 시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메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4. 예산시민보고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시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1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민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① 시장은 위원들의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장과 협의하여 시민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시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시민위원회 간사는 별지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시민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천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시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시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시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②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③ 제천시농공단지관리및조성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

④ 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재정법 제76조 제2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 제2항”으로 한다.

⑤ 제천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⑥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⑨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10) 제천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8조”로 한다.

(11)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분과)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서 명	위원장(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 사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 11. 23. 대통령령 제19735호]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천시공고 제 2006 -1713호

제천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8일

제 천 시 장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안 제6조)

-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안 제10조~제22조)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원칙, 운영,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 해촉 등, 분과위원회등, 회의록 공개의 원칙, 교육 홍보 및 주민 참여,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재정 및 실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640-5034 . FAX 640-5029. E-mail :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담당자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
12/29 서민이	2012.12.29.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 조례명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06. 12. 08 ~ 2006. 12. 28

3. 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내용

제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 개정.

5.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예산을 소중하게! 예산을 알뜰하게!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3615('06.6.22)호 및 재정정책팀-4728('06.8.17)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표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시·군에서는 본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주
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더01-12(예산관련부서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예산담당관

협조자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시행 예산담당관실-5057 (2006.08.21.) 접수 기획감사실-6010 (2006.08.23.)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213 / 전송 043) 220-2219 / ygyg@cb21.net / 공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 주민예산제는 「자치법상 자치단체」「자치구」「군」에 걸친 지역에서 운영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장기준제에서는 「부수당면」을 기준으로 한 배정액의 20%에 맞게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기준비를

행 정 자 치 부

○○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특·광역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